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22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김현정・황정아・이기헌

민병덕 • 이병진 • 조인철

전재수 · 박균택 · 서미화

이개호 • 박정현 • 박상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,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앱 마켓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플레이(Google Play), 애플의 앱 스토어(App Store)의 경우두 기업이 가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·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

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1호"를 "제12호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(이동통신단 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)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수단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금지행위) ① 전기통신사	제50조(금지행위) ①
업자(제9호부터 <u>제11호</u> 까지의	<u>제12호</u>
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	
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	
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	
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	
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금지	
행위"라 한다)를 하거나 다른	
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	
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	
여서는 아니 된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.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
	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(이동
	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
	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
	환경을 말한다)를 제작하여
	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
	경우로서 자신이 운영하는
	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
	켓이나 수단을 통하여 이용자
	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

	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
	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
	이 제한하는 행위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